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형사재판 기간 동안 지급된 수당 등 환수〉
■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60호)

2024. 8.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희정 · 서일준 · 이종배 · 박준태 · 김태호 · 이인선
임이자 · 서지영 · 곽규택 · 구자근 · 강대식 · 박정하
안상훈 · 이성권 · 정성국 · 이만희 · 한지아 · 조배숙
조지연 · 이헌승 · 서명옥 · 정연욱 의원(22명)

2. 제 안 일 : 2024. 6. 5.

3. 회 부 일 : 2024. 6. 11.

※ 의안번호 : 16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을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

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환수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수당 등의 환수) 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환수한다. ② 제1항의 재판은 국회의원의 임기 중 또는 임기 전에 범한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재판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공소는 국회의원의 임기 전에 제기된 경우를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¹⁾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 등에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1)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2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11조(입법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3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제12조(특별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제13조(입법 및 정책개발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여비)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가 있음.

이 중 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보수 성격의 금전이고, 입법활동비는 입법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연구 등을 위한 지원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며, 특별활동비는 회기일수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회기 중 지급하되 회기에 결석할 경우 감액함.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 여비는 공무 수행을 위한 여행 시 지급됨.

[표-2]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등

구 분	근거조항	지급목적	지급성격	비고
수당*	제7조	매월 지급되는 보수 성격의 금전	급여 (매월지급)	*국회법 §163조①에 따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시 출석정지기간동안 수당 등 1/2감액 ²⁾
입법활동비	제11조	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지급	지원 경비 (매월지급)	
특별활동비	제12조	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제13조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	경비 (청구에 의하여 지급 등)	*정액지급경비는 징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여비	제14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 시 지급		

* 기존의 세비(歲費)라는 용어는 「(구) 국회의원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회의원에게 국무위원이 받는 보수와 동액의 세비를 지급한다”라는 규정에서 사용되었으나, 현행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세비 대신 수당이라는 표현을 사용

2) 같은 조 제2항은 제155조제8호(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제10호(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제11호(회의장 출입방해)로 인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의 경우에는 수당등의 1/2을 2개월 간 감액하고, 출석정지의 경우에는 수당등을 3개월간 미지급하도록 정함.

헌행법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³⁾하거나 징계⁴⁾를 받는 경우 이외에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공소 제기 후 재판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에 국회의원으로서 지급 받았던 수당 등을 환수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보아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판례⁵⁾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은 계속적인 역무의

-
- 3)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 ②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4)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는 90일)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6호·제7호의2 또는 제7호의3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 5)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급여채권은 계속적인 역무의 제공에 대한 보수를 총칭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수입도 여기에 포함되는 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라고 정하여,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과 공무원이 지급받는 보수가 서로 대체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여·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세비인 수당을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와 같은 수당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급여·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제공에 대한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을 상실⁶⁾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형의 확정 전까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과 그 수행한 직무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한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따라서,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 등의 성격, 지급 취지 및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또는 국회의원이었다던 사람)에 대한 경제적 제재 필요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형사재판 절차 중 구금되는 등의 사유로 신체적 자유가 제한되어 의정활동의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기간을 대상으로 적정 범위를 설정하여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또는 공소 제기 후 구금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죄가 확정된 때에 지급을 중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여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는 알류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례, 2014.8.11. 2011마2482)

6) 「국회법」 제136조(퇴직)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舉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지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3] 유사 취지 계류법률안의 주요내용

구 분	서천호의원안 (2201122)	최수진의원안 (2201346)	한정애의원안 (2202271)
수당 등의 지급 중지 사유	국회의원 구속	국회의원 구속	국회의원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지급 중지되는 수당 등의 범위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수당 소급지급 사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		

문 의 처

02)6788-5014

